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4나2477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4나2477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3 선고 2022가단536345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유태훈

피고, 항소인B

변론 종결 2024. 10. 22.

판결 선고 2024. 11. 1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3. 선고 2022가단536345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피고와 C 사이에 2021. 11. 2. 체결된 1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 및 2021. 11. 4. 체결된 5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항소이유서 등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추가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성지호

판사김현미

판사조휴옥